



## 기 획 재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재 수급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이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자재 조달이 곤란한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재 수급으로 인한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공공사 현장의 계약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 조치사항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관련 근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5조제3항, 제23조제1항

### 2. 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조치사항

- 공사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항

. 끝 .

##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운영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세청장,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병무청장, 농촌진흥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상청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새만금개발청장, 통계청장, 문화재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특허청장, 일자리위원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

사무관 **이윤정** 계약정책과장 전결 2021.6.3.  
**손창범**

협조자

시행 계약정책과-818 접수 운영지원과-12430 (2021. 6. 3.)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 www.moef.go.kr

전화번호 044-215-5212 팩스번호 044-215-8113 / leeyoung@korea.kr / 대국민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